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7. 3. 6. 제 천 시 장
- 회 부 일 : 2007. 3. 7
- 상 정 일 : 2007. 3. 13(제13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수도사업소장 연재욱)

가. 제안이유

- 2001년 상수도요금 25%(읍·면·동 평균인상률) 인상후 현재까지 요금인상 동결로 재정적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상수도요금 현실화 달성 미흡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의 불이익과 급수구역 확대 및 시설개량 투자사업비 확보의 차질등 제천시 수도특별회계 재정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이의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 지침(2001년 7월)에 의한 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요금 현실화를 달성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요금 부과제도 개선(별표3) : 업종 통폐합
 - 현행6종(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옥탕1종, 옥탕2종, 전용공업용)
 - 개정4종(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 업종별 인상률

지 역 별	업 종 별	현행 평균요금	개정 평균요금	인상률(%)
총 계		704	810	15
동지역	평 균	714	815	14.1
	가 정 용	508	617	21.4

	업 무 용	1,212	1,686	39.1
	영 업 용	1,599	1,449	-9.4
	옥탕2종	1,565	1,703	8.8
	옥탕1종	1,381	1,388	0.5
	전용공업용			
읍면지역	평 균	608	757	24.5
	가 정 용	382	526	37.7
	업 무 용	1,005	1,309	30.2
	영 업 용	1,192	1,243	4.2

- 급수장치 손료 및 구경별 요금인상(별표5)
 - 읍면지역 평균 77.8%, 동지역 36.3%
 - 요금수입의 2.5% ~ 3.8% 비중 → 3.0% ~ 4.6%
- 누수감면규정 개정(제30조 제4항)
 - 누수감면 기회 확대 : 년1회 → 년2회
 - 누진체계 개선에 따른 누수감면 규정 개정
- 가산금율 인하 : 5% →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동수)

【 法的檢討 】

- 수도법 제8조 및 제23조 등에서 수도요금의 체계 확립과 수돗물의 요금, 급수 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행정자치부 : 2001년 7월)에 의거 불합리한업종 구분을 통합 개선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있음.
-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06년 10월 27일,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등에 의거 2006년 11월 14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음.

【 行政的檢討 】

□ 제천시 상수도 현황(2005. 12. 31 기준)

- 시설현황
 - 시설용량 : 86,650m³/일
 - 취수용량 : 59,950m³/일
- 1일 평균생산량 : 34,183m³/일
- 급수인구 : 117,223명 m³/일(읍·면 : 11,069명, 동지역 : 106,154명)
- 급수보급율 : 84.4%(읍·면 : 40.2%, 동 : 95.3%)
- 1인 1일 급수량 : 292ℓ(읍·면 : 350ℓ, 동 : 290ℓ)
- 급수사용량 및 사용료 현황

(단위 : 천톤, 천원)

구분	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옥당1종	옥당2종
사용량	9,174	7,094	727	1,214	137	2
사용료	6,461,821	3,528,540	858,307	1,882,426	188,566	3,982

※ 1일 평균사용량 : 25,135m³(유수율 : 73.5%)

- 총괄원가 및 생산·판매 단가 현황

(단위 : 천원, 천톤)

총괄원가 (천원)	연간조정량 (천톤)	생산원가 (m ³ /원)	판매단가 (m ³ /원)	급수수익 (천원)	비고
9,512,500	9,174	1,037	704	6,461,821	

□ 상수도특별회계 부채현황(2006. 12. 31 기준)

- 부채현황 (단위 : 천원)

자금별	계	원금	이자	비고
계	7,820,165	7,187,000	633,165	
재특자금	2,689,695	2,370,000	319,695	
환특자금	1,123,945	1,042,000	81,945	
지역개발기금	4,006,525	3,775,000	231,525	

< 표1 >

업종별 수용가구수 및 요율 인상 분석표

(읍면지역)

(단위 : m³/원)

업종별	현			개정안		비 고	
	사용량	금 액	수용가구수	금 액	㎡당 단가 인상율		
가정용	0-10	310	1,209	440	41.9%	0-20	440
	11-20	360	1,536	440	22.2%		
	21-30	430	244	660	53.4%	21-30	660
	31-40	530	114	970	83.0%	31이상	970
	41-50	680	32	970	42.6%		
	51이상	840	34	970	15.4%		
업무용	0-20	780	162	1,020	30.0%	0-50	1,020
	21-50	830	57	1,020	22.8%		
	51-100	980	20	1,220	24.4%	51-100	1,220
	101-300	1,180	9	1,520	28.8%		
	301이상	1,350	8	1,830	35.5%		
영업용	0-20	940	114	1,020	8.5%	101-300	1,520
	21-50	1,090	92	1,020	△6.4%		
	51-100	1,240	32	1,220	△1.6%		
	101이상	1,430	10	1,520	6.2%		
옥탕2종	0-100	750		1,220	62.6%	301이상	1,830
	101-300	920		1,520	65.2%		
	301-500	1,120		1,830	63.4%		
	501이상	1,330		1,830	37.6%		
옥탕1종	0-100	490		690	40.8%	0-500	690
	101-300	560		690	23.2%	501-1,000	1,030
	301-500	670		690	2.9%	1,001-1,500	1,120
	501이상	810		1,030~ 1,550	27.2%~ 91.3%	1,501이상	1,550
전용공업용	0-200	260		290	11.5%	0-200	290
	201이상	400		440	10.0%	201이상	440

< 표2 >

업종별 수용가구수 및 요율 인상 분석표

(동지역)

(단위 : m³/원)

업종별	현행			개정안		비고	
	사용량	금액	수용가구수	금액	㎡당 단가 인상율		
가정용	0-10	460	5,308	560	21.7%	0-20	560
	11-20	520	19,164	560	7.6%		
	21-30	570	7,009	840	47.3%	21-30	840
	31-40	710	648	1,120	57.7%	31이상	1,120
	41-50	860	221	1,120	30.2%		
	51이상	990	187	1,120	13.1%		
업무용	0-20	970	1,173	1,240	27.8%	0-50	1,240
	21-50	1,000	381	1,240	24%		
	51-100	1,080	87	1,490	37.9%	51-100	1,490
	101-300	1,250	45	1,990	59.2%		
	301이상	1,670	26	2,480	48.5%		
영업용	0-20	1,330	1,332	1,240	△6.8%	101-300	1,990
	21-50	1,380	807	1,240	△10.2%		
	51-100	1,680	283	1,490	△11.3%		
	101이상	2,260	157	1,990~ 2,480	△12.0%~ △9.7%		
육탕2종	0-100	1,230		1,240~ 1,490	0.8%~ 21.1%	301이상	2,480
	101-300	1,840	1	1,990	8.1%		
	301-500	2,460		2,480	0.8%		
	501이상	3,010		2,480	△17.6%		
육탕1종	0-100	860	12	830	△3.5%	0-500	830
	101-300	910	3	830	△8.8%	501-1,000	1,240
	301-500	1,190	2	830	△30.3%	1,001-1,500	1,490
	501이상	1,520	4	1,240~ 2,060	△18.5%~ 35%	1,501이상	2,060
전용공업용	0-200	360		400	11%	0-200	400
	201이상	480		530	10.4%	201이상	530

< 표3 >

업종별 사용량 요금 대비표(현행/인상)

<읍면지역>

(단위 : 원)

업종별	사용량	요금 대비표			비고
		현행	인상	인상율	
가정용	10m ³	3,100	4,400	41.9%	
	20	6,700	8,800	31.3%	
	30	11,000	15,400	40%	
	40	16,300	25,100	53.9%	
	50	23,100	34,800	50.6%	
	55	27,300	39,650	45.2%	
업무용	20	15,600	20,400	30.7%	
	50	40,500	51,000	25.9%	
	100	89,500	112,000	25.1%	
	200	207,500	264,000	27.2%	
	320	352,500	452,600	28.3%	
영업용	20	18,800	20,400	8.5%	
	50	51,500	51,000	△0.97%	
	100	113,500	112,000	△1.3%	
	120	142,100	142,400	0.2	

타시군 업종별 수도요금 대비표

(단위: 원)

구 분	생산 원가	평균 단가	현실화율 (%)	사용량 (톤)		요 금 대 비 표			비 고
						가정용	일반용 (영업용)	대중탕용	
치천시	1,037	704	67.9	30	현재	15,500	40,400	25,800	
					개정	19,600	37,200	24,900	
해주시	561	598	106.6	30	13,600	26,400	19,500	광역상수도 (톤당 : 213원 ⇒ 598원)	
충주시	700	609	87.0	30	13,600	(23,400)	14,100	광역상수도 (톤당 : 394원 ⇒ 609원)	
옥천군	1,106	861	77.9	30	17,600	31,200	25,500		
청원군	1,392	968	69.4	30	17,900	(37,800)	24,600		
단양군	959	805	83.9	30	12,900	(25,800)	15,900		
보은군	784	472	60.2	30	8,400	(21,300)	11,400		
영동군	910	544	59.7	30	9,600	20,700	15,900		
증평군	1,032	769	74.6	30	14,100	23,400	26,700		
진천군	890	664	74.6	30	14,500	(17,100)	12,000		
괴산군	1,008	777	77.1	30	15,400	28,100	21,000		
음성군	950	667	70.2	30	17,900	(27,300)	15,900		

< 표4 >

업종별 사용량 요금 대비표(현행/인상)

<동지역>

(단위 : 원)

업종별	사용량	요금 대비표			비 고
		현 행	인 상	인상율	
가정용	10m ³	4,600	5,600	21.7%	
	20	9,800	11,200	14.2%	
	30	15,500	19,600	26.4%	
	40	22,600	30,800	36.2%	
	50	31,200	42,000	34.6%	
	55	36,150	47,600	31.6%	
업무용	20	19,400	24,800	27.8%	
	50	49,400	62,000	25.5%	
	100	103,400	136,500	32.0%	
	200	228,400	335,500	46.9%	
	320	386,800	584,100	51%	
영업용	20	26,600	24,800	△6.8%	
	50	68,000	62,000	△8.8%	
	100	152,000	136,500	△10.2%	
	120	197,200	176,300	△10.6%	
욕탕2종	100	123,000	136,500	10.9%	
	120	307,000	335,500	9.2%	
욕탕1종	100	86,000	83,000	△3.5%	
	300	268,000	249,000	△7.1%	
	400	387,000	332,000	△14.2%	
	580	627,600	514,200	△18.1%	

- 급수장치손료 구경별 요금 개정안을 살펴보면(2006년 9월 7일 상수도 요금인상계획 의원 간담회 자료참고)

【 별첨 2 】

급수장치손료, 구경별요금 대비표

(단위 : 원)

계량기 구경별	현 행		개 정 (안)		인 상 율		읍면동 요금비율	
	동지역	읍면지역	동지역	읍면지역	동지역	읍면지역	현 행	개 정
13mm	570	470	680	570	19.3%	21.3%	82.5%	83.8%
20mm	1,330	660	1,630	1,360	22.6%	106.1%	49.6%	83.4%
25mm	2,560	1,430	3,130	2,620	22.3%	83.2%	55.9%	83.7%
32mm	4,100	1,970	5,100	4,250	24.1%	115.7%	47.9%	83.3%
40mm	5,660	2,510	6,940	5,810	22.6%	131.5%	44.3%	83.7%
50mm	6,910	4,920	10,200	8,550	47.6%	73.8%	71.2%	83.8%
75mm	22,040	19,340	-	-	-	-	87.7%	-
80mm	-	-	34,020	28,520	-	-	-	83.8%
100mm	35,270	33,760	51,030	42,790	44.7%	26.7%	95.7%	83.9%
150mm	59,550	56,000	102,070	85,580	71.4%	52.8%	94.0%	83.8%

- 상수도 사용료 업종별 인상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업종별로 현행 영업용, 업무용, 옥탕2종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세분화 되어있는 사용량의 단계를 2~3단계로 통합 하는 등 대폭 변경 하였음.
따라서, 업종별 단계별로 수용가의 부담률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표3>의 읍면지역의 가정용 월10m³을 사용할 시 현행 3,100원의 요금이 4,400원이 되어 41.9%가 인상되고 40m³ 사용시 현행 16,300원에서 25,100원이 되어 53.9%가 인상되며, 영업용 50m³ 사용시 현행 51,500원에서 51,000원이 되어 0.97%가 감되는 등 업종별 단계별로 현행 요금체계와 인상시 요금체계의 인상율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3과 표4의 읍면지역과 동지역 업종별 단계별 요금 변동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수용가의 민원발생 사항 등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동지역과 읍면지역, 계량기 구경별 요금 인상률도 적게는 19.3%에서 많게는 131.5% 등 인상폭의 격차가 큰 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인상율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요금체계 개선에 따른 누수감면 규정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 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2001년 7월)에 의하면, 가정용의 누진구간이 10-20-30-40-50m³/월 이상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나, 평균사용량은 10-25m³/월이고, 30m³/월 이상 사용수용가는 소수임.
따라서, 가정용, 일반용, 옥탕용 등의 요금체계를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제로 개선하려는 것이며, 이를 연차별로 시행 2003년까지 지역실정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토록 시달 하였으며, 2004년도 상·하수도요금 100% 현실화 목표달성을 위하여 2004년 상반기중 요금현실화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시달 한 바 있음.

- 상수도요금 원가는 m³당 1,037원이며, 2005년 결산 판매단가는 704원으로 현행 요금체계에서의 현실화율은 67.9%로 인근 충주시 현실화율 87% 청주시 106.6% 등으로 제천시의 요금 현실화율이 극히 미진한 실정임.(특히 청주, 청원, 보은 등의 도내 타 자치단체는 2005년도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였음)

제천시는 2001년 상수도요금 평균 25% 인상후 현재까지 요금 인상이나 요금 체계 개선 실적이 없었으므로 금번 이를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겠으나, 요금 체계의 통합과 인상을 동시에 시행하므로 현행 체계에서의 수용가 인상율의 격차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용가에 미치는 영향과 요금체계의 개선 및 요금인상에 대한 걱정성 등을 세밀하게 분석 그 대책 수립 등을 꼼꼼히 따져 분석하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 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적자운영중에도 2001년이후 요금의 인상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와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대안모색을 하였는지 여부는?(김병창 의원)
- 인상을 평균 15%정도이나 소비자의 체감정도는 그 이상이며 수용가에 대한 누진적용이 되지 않았고, 보통교부세 산정시 현실화율이 낮아 약 5억5천이라는 재정손실을 끼쳤고, 홍보에 있어서도 소홀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유영화 의원)

나. 답변요지 < 수도사업소장 연재욱 >

- 지역경기 불황과 경제가 좋지 않아 인상을 동결하였으며 원가절감을 위해 인력감원 3명과 조그마한 시책사업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원가절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음.
- 요금체계의 조정은 지침에 의함으로 누진적용이 되지않은 부분과 수도요금 인상을 체감상승에 대하여는 추후 환경부의 세미나, 정책

토론회등 기회가 되면 건의 보완토록 하겠으며, 인상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나 상대적으로싼 물값으로 인하여 인상금액은 많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체감정도는 그다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 요금의 현실화율로 재정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며, 수도사업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시민들이 오해없이 공감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음.

5. 소 수 의 견

“ 없 음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